한국대학스키연맹 학생위원회 회칙

개정일: 2026.05.2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대학스키연맹 학생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이다.

제2조 (소속) 본회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전국 규모 경기 단체인 한국대학스키연맹의 구성원이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학 스키팀(이하 "스키팀"이라 한다)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 스키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동계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한국대학스키연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준수) 본회는 한국대학스키연맹 정관을 준수한다.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회원 가입되어 활동하는 스키팀이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6조 (운영 및 의사결정 기구)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기구는 학생위원장, 부위원장, 임원, 그리고 각 스키팀 주장단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1년이며, 매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종류)

① 본회의 회원인 스키팀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소속된 스키팀 중 제10조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스키팀을 말한다.

③ 준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소속된 스키팀 중 제10조에 따라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스키팀을 말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 내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본회 내의 각종 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운영 정보 접근권: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사업계획, 결산 보고 등)를 열람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권리

2. 의견 개진 및 청구권: 본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 기구에 특정 안건의 심의를 청구할 권리

3. 공정 심사 및 방어권: 자격 변동 및 징계 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고 충분한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받으며, 변론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

④ 회원은 본회의 공동체 유지와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규정 준수: 본 회칙 및 본회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제5장(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품위 유지 의무: 연맹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할 의무

⑤ 각 스키팀의 구성원은 자신이 소속된 스키팀 대표자(또는 주장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 자격 변동)

① 회원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 의무가 있으며, 학생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선정, 회기 내 마지막 주장단 회의에서 그 대상팀을 발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한다.

1. 승격 : 준회원이 당해 학생위원회 임기 내 진행된 회의 및 행사 참석률이 50% 이상일 경우, 정회원 승격 대상이 된다.

2. 강등 : 정회원이 당해 학생위원회 임기 내 진행된 회의 및 행사 참석률이 50% 미만 0% 초과일 경우, 준회원 강등 대상이 된다.

3. 운영중단팀 전환 : 운영중단팀으로의 전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상이 된다.

가. 전 회기 내 개최된 회의 및 행사 참석률이 0%일 경우

나. 전 회기 내 학생회비 납부자가 없는 경우

다. 인원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스키팀이 운영중단을 학생위원회에 공식 요청한 경우

② 차기 학생위원회는 첫 주장단회의에서 전 회기 내 참여 결과에 따른 자격 심사를 의결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제11조 (자격심의 절차) 학생위원회는 자격 심사를 위해 투표진행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강등 투표의 경우, 투표에 앞서 강등 대상 스키팀의 대표자에게 충분한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승격 투표 및 운영중단팀 전환 투표의 경우, 별도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중단팀의 복귀)

① 운영중단팀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생위원회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결정 기구의 의결을 거친다.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결과는 즉시 발표한다.

② 운영중단팀이 복귀하는 경우 제27조(가입 자격)의 '자체적 단체 활동 충족' 요건은 면제하며, 지위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3장 학생위원회 임원진

제13조 (학생위원장 후보자의 자격) 학생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스키팀에 소속으로 휴학 또는 재학 중인 자

2. 1년 이상 본회의 활동에 참여한 자

3. 현직 학생위원장의 추천을 받거나 10개 이상의 스키팀 주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

제14조 (학생위원장 선출 방식)

① 학생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각 스키팀 당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유권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유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15조 (학생위원장의 선임 및 지위) 차기 학생위원장은 회기 내 마지막 주장단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한국대학스키연맹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를 대표한다.

제16조 (학생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학생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임원진을 구성한다.

2. 주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운영장이 된다.

제17조(학생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수립

2. 회의 사업 결과 보고 및 결산 보고

3. 주장단 회의 운영

4. 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재정과 개정 작업

5.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18조 (임기) 학생위원장 및 학생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부위원장의 지위 및 직무) 부위원장은 학생위원장을 보좌하며 학생위원장 유고 시, 학생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은 학생위원장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부위원장이 대행 권한을 가진다.

제20조 (학생위원회 임원 승인) 학생위원장은 해당 회기의 학생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주장단 회의

제21조 (주장단 회의)

① 본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장단 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학생위원장은 매 회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장단 정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임시 주장단 회의는 학생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각 스키팀의 주장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 참석치 못할 시에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주장단 회의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출석을 포함한다)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칙 개정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출석을 포함한다)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활동 포인트 제도에 관한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출석을 포함한다)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정기회의) 학생위원회의 주장단 정기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 확정되며, 승인 여부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당 회기 운영 목표, 행사 계획 및 예산안
2. 전 회기 사업 결과 및 결산 결과 보고
3. 전 회기 참여 결과에 따른 스키팀 자격심의
4. 회칙의 재개정

제24조 (회의 및 행사 참석률 기준) 회의 및 행사 참석률은 당 회기 내 진행된 회의 및 행사 전체 횟수 대비, 해당 스키팀이 참가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장 재정

제25조 (경비 충당) 본회의 경비는 본회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제26조 (학생회비 납부)

① 본회의 회원 구성원은 매 회기 학생회비를 연 1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매 회기 학생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하며, 주장단 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결산보고) 본회의 결산보고는 학생위원회에서 회기 종료 후 이사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징계

제28조 (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키팀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해당 징계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1. 부정선수를 대회에 출전시킨 경우

   가. 부정선수란 대회 미등록자, 대리 출전 선수, 본인 자격과 상이한 부문 경기 출전 선수를 말한다.

   나. 부정선수는 본회에서 영구 제명한다.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맹 및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7장 가입

제29조 (가입 자격) 한국대학스키연맹 및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스키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속 회원이 2인 이상일 것

2. 가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매 학기 1회 이상의 자체적인 단체 활동 실적을 보유할 것

제30조 (가입 절차)

① 한국대학스키연맹 및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스키팀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장단 회의에서 준회원 가입 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가입 여부는 제1항의 발표 후 주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제31조 (가입비 납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준회원 가입이 승인된 경우,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학생위원장은 준회원 가입 승인을 이사회에 요청할 때 가입비 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한국대학스키연맹 개최 대회 참가 자격

제32조 (1부 자격)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1부의 자격을 얻는다.

1.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에 알파인 스키 종목 엘리트 선수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 주니어데몬스트레이터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

3. 대한스키지도자연맹 Level 3 이상 또는 스키장경영업협회 Teaching 3 이상 자격 보유자.

4. 한국대학스키연맹 개최 스키대회 중 신인부 대회를 제외한 대학부 개인전 입상(3위 이내) 기록 보유자.

제33조 (신인)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신인의 자격을 얻는다.

1. 한국대학스키연맹에서 개최한 대학부 대회 출전기록이 없고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이전 신인부 대회의 출전기록(DNS)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위원회와 한국대학스키연맹 경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 신인부 대회 출전 자격을 가진다.

제34조 (시상)

① 개인전 시상은 한국대학스키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한다.

② 단체전 시상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대학스키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해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